

2025년도 AI반도체글로벌역량강화 신규과제 선정 공고 - 디지털혁신인재단기집중역량강화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디지털 혁신 기술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디지털혁신인재단기집중역량강화(글로벌 교육) 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사업명 : 디지털혁신인재단기집중역량강화(교육훈련)

사업목적

-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해외 최고 수준 대학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ICT 분야 국내 대학원생들을 파견·교육하여 고급 인력 양성

* 디지털 혁신기술 : AI, AI반도체,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양자정보통신, 5G-6G

신규지원 과제

- AI반도체 글로벌 고급인재(석·박사급)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과정(AI반도체 분야 해외 최고 수준 대학) 개설·운영, 파견 교육생 선발·교육·관리·성과홍보 등 지원

공고기간 : 2025.4.10.(목) ~ 2025.5.21.(수)

- 전산접수기간 : 2025.5.14.(수) ~ 2025.5.21.(수) 오후 3시까지

※ 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사업설명회 : 2025.4.22. 14:00~15:00 / 대한상공회의소 12층 IITP 대회의실

접수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한 신청 접수

* IRIS를 통한 접수 방법은 매뉴얼 참조

※ 관련 법령 개정 등 주요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신청시 중점 고려사항 안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ICT R&D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후속연구 및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새롭게 시행하는 사항들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안내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반영하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 선정 이후 연구자의 이행사항 안내 】

ICT R&D 연구자간 시너지 향상과 우수성과 결과물이 R&D로 끝나지 않고 시장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①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회/년 참여를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평가 운영을 위해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검토에 참여하신 연구자분들은 과제 기획위원 또는 정부정책 및 사업추진 관련 전문가 회의시 우선적으로 위촉하여 드릴 예정이오니,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의거하여 수행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③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수행 중이거나 종료된 과제에서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논문, 특허, 표준화, 기술이전 등)을 부처(과기정통부 등) 및 IITP에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성과 홍보 시(각종 전시 참여·홍보 등) 다음의 사사(acknowledgement) 문구(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언론 홍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IITP와 협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구 예시) ~~(중략) 0000 연구성과는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0000사업'으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생략)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공과 우리나라 ICT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사업목적

-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 해외 최고 수준 대학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ICT 분야 국내 대학원생들을 파견·교육하여 고급인력 양성 및 산업계 인력공급
- * 디지털 혁신기술 : AI, AI반도체,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양자정보통신, 5G·6G

2

신규 지원사항

- (지원대상) 비영리법인
 -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과제를 기획·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인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제1항의 2에 따른 비영리법인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공동연구기관(비영리법인)과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
- (예산규모) '25년 5억원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5년에 한정하여 확정('26~'30년 매년 21억원 예정), '26년부터 정부예산 상황 및 국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총 6년(1단계 : 3년, 2단계 : 3년)
 - ※ 총 6년을 협약·지원하되 과제 수행 3년 후 단계평가를 통해 추가 3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연구개발과제가 변경·중단되거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증액될 수 있음
- (지원규모) 1개 신규 과제
- (지원분야) AI반도체(글로벌 교육 훈련)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지원내용) AI반도체 글로벌 고급인재(석·박사급) 양성을 위한 위탁 교육과정(AI반도체 분야 해외 최고 수준 대학) 개설·운영, 파견 교육생 선발·교육·관리·성과홍보 등 지원

< 해외 파견 교육 지원(안) >

- 교육인원* : 연간 30명 내외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외 파견 환경 변화 등에 따라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부처 협의를 통해 필요시 변동될 수 있음

년도	위탁 교육 기간	교육인원	연구비	지원 내용
'25년	해외 교육 과정 개설 등		5억원	· 교육과정 개설·운영, 파견 교육생 선발·교육·관리·성과홍보 등
'26년~'30년	6개월	연간 30명 내외	연간 21억원 규모	
합계		150명 내외	약 110억원	

※ 연구개발비의 편성 및 집행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름

○ (기타사항)

- 민간부담금 없음 (출연금 100%)
- '25년 연구개발비 일부(60%이상)는 해외 협력 대학의 위탁 교육비* 등 차년도('26년) 신규 과정 개설에 사용
 - * 해외 협력 대학의 위탁 교육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활동비로 사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10% 이내로 산정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정부출연기관 간접비율 적용기준) 제2항의 5, 제46조, 제55조

3 신청 자격 및 참여 조건

□ 신청 자격

- 해외 협력 대학과 협의하여 과제를 기획·운영·관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 참여 조건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글로벌 교육과정 참여 의사가 확인*되는 해외 협력 대학과 세부 협의를 통해 AI반도체 분야 글로벌 교육과정 개설·추진
 - *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교육과정(Curriculum) 등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글로벌 교육과정 기획(안) >

- 목적 : AI반도체 분야 해외 최고 수준 대학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석·박사생 등을 파견·교육 (6개월)하여 글로벌 현장 감각을 갖춘 고급 인재 양성
- 하기 신규 과제 **추진 방향에 부합하도록** 지원기관에서 글로벌 위탁 교육과정 제안

추진 방향

[인재상] AI 반도체 아키텍처 인력(AI 반도체 시스템 설계, 개발에 특화된 전문가)

· AI 반도체 아키텍처 인력에게 필요한 역량

- ① AI Framework* ② System AI 적용 이해 및 분석 ③ AI 반도체 설계 최적화 ④ AI 기능 검증 등 (①, ④ 한국 학생 역량 다소 부족, ② 산학 연계형 교과목 필요, ③ 필수역량)

*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델을 개발, 학습, 배포하는데 사용하는 SW Library와 Tools

[협력 우선 대학] Stanford, UC Berkeley, MIT, CMU 또는 이에 준하는 대학(원)

* 상기 대학(원)은 산·학·연 AI반도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커리큘럼, 교수진, 인프라, 한국과의 협력, 글로벌 순위, 산학연 연계 등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외 준하는 대학(원)은 지원기관이 자발적 검토·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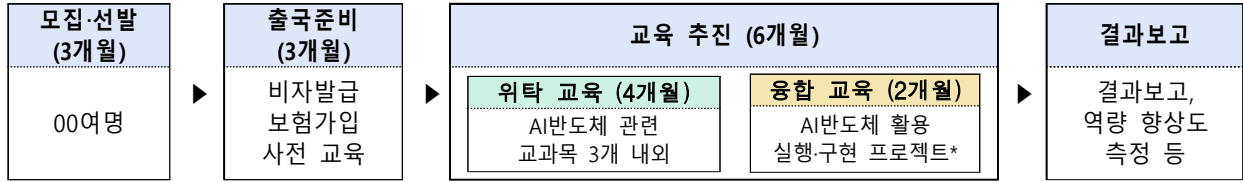
[교육 과정(안)] Architecture(NPU, 경량화 또는 최적화 알고리즘) + AI/ML + System SW 등

※ 과제 수행기간 중에 AI반도체 이슈, 정부 정책 변경 등으로 추진 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음(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부처 협의)

< 운영 (예시) >

- 하기 추진 계획(안)을 참고하여, 지원기관에서 **자율적·효과적으로 내용** 제안
- 파견 교육생 추진 계획(선발→출국준비→교육과정 점검→성과관리 등)을 수립하고, 지속적 관리

< 예시 >



- ※ 예시) 산·학·연 프로젝트(Term Project), FPGA(H/W 재배치 없이 프로그래밍)구현, Simulator 활용 등 실전경험
- (모집) 잠재력이 있는 국내 AI분야 대학원생을 선발하기 위해 전국 정보통신분야 등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방면 홍보 추진
- (선발) AI반도체 분야 글로벌 교육 역량*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파견 교육생 선발
 - ※ 예시) 수학, 학부 수준의 Computer Architecture 등 능력 검증(시험) 및 면접(영어) 추진
- (출국 준비) 파견 교육생의 비자, 보험 등 물리적 지원과 해외 파견 AI반도체 선수교육*, 소양 교육 등 현지 적응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시
 - ※ 예시)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AI관련 이론, colab 등 온라인 교육
- (교육 추진) 해외 협력 대학은 AI반도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커리큘럼 등 프로그램 운영(6개월 필수)*
 - * (해당 사업 유사 과제) 이론 교육 3~4개 과정, 팀 프로젝트 실습 1개 과정으로 구성·운영 중
- (현장 관리) 파견 교육생 모니터링*, 교육 지도, 환경 조성 지원 등 교육 현장 상황 관리
 - * 불성실한 글로벌 교육생(찾은 결석, 과제 미제출 등)으로 인한 미이수자 예방 관리 등
- (성과 관리) 논문, 우수성과 발표회 개최 등 성과 창출을 지원하고, 해외 협력 대학 교류, 설문조사 등 교육과정 반응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개선 추진
- (사후 관리) 교육 과정 이수 이후 진로 모니터링, 간담회 및 네트워크 장 마련 등 사후관리·홍보

○ 파견 교육생 자격 및 지원

- '파견 교육생'은 ICT 분야 대학원생* 등(한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 국내 소재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 수료 후 연구생으로 휴학 상태에서는 지원 불가
- 석·박사 진학 예정자 가능(증빙 및 서약서 등을 제출), 박사 후 과정(박사학위 취득자) 불가
- 파견 기간 중 졸업 등으로 재학생 신분 상실이 예상될 경우 선발 과정에서 제외
- 정부 유사 사업* 수혜자(파견)는 중복 수혜 불가
- * (과기정통부) 디지털분야글로벌연구지원사업, (산업부)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해외연계)·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등

- (지원내용) 교육비, 파견 제반비용(항공료, 체재비 등) 1인당 약 55백만원 내외 지원
 - ※ (교육비) 해외 협력 대학 별로 상이할 수 있음, (체재비) 국가별 차등 지급(부족한 경비는 자비로 부담)
- 파견 교육생은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교육, 체재비, 항공료 등 지원 가능

의무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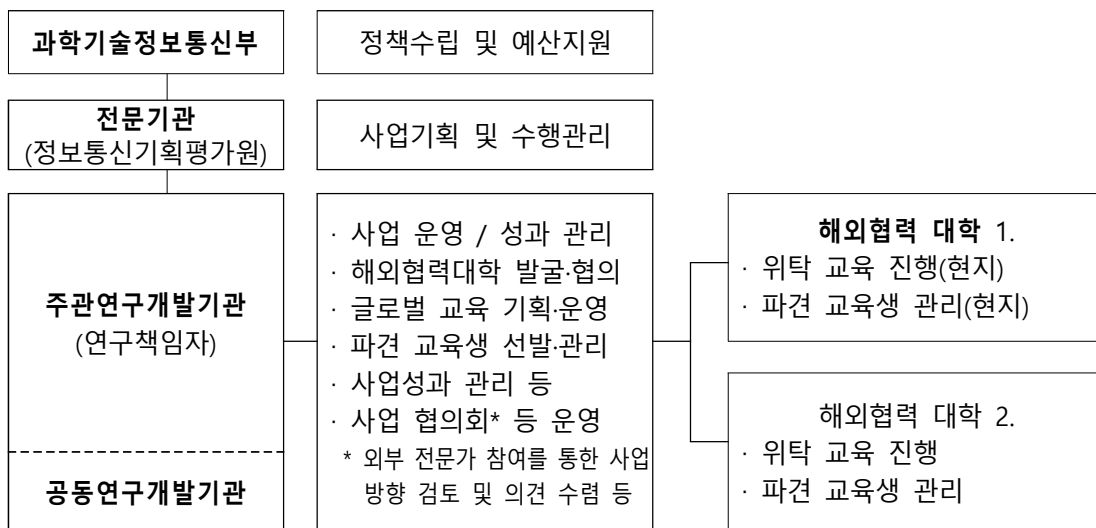
- 파견 교육생은 교육 종료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한 날짜에 반드시 귀국하여야 하며, 미복귀, 중도 포기, 신분의 변화(자퇴, 퇴학 등)시에는 당사자에게 지원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 파견기간 중 국내 체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건강 악화 등)에 한해 최대 2주(출입국사실증명서 증빙)이내 허용*
 - * 체류를 위한 항공료 등 일체 비용 연구비 집행 불가, 체류기간 일할 계산하여 체재비 반납
- 전문기관(IITP)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요건 등을 위배 하는 경우 즉시 교육 중단, 지원액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

○ 해외 협력 대학

- 해외협력대학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파견 교육생의 역량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하며 세부 운영 방안 협의
- 파견 교육생 선발을 위한 시험 과정을 설계하고 시험문제 출제 및 평가, 인터뷰 등 지원
- 파견 교육생 출결 관리, 교육 등을 지도하고, 교육환경 조성, 프로그램 추진 상황 관리
- 파견 교육생의 프로그램 수행 성실도, 역량강화 정도, 과정 이수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협조 등

4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해외 협력 대학'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위탁교육)이 가능한 해외 우수 대학(원)

* 2026년~예산 사정, 정책 방향 등에 따라 해외 협력 대학 추가,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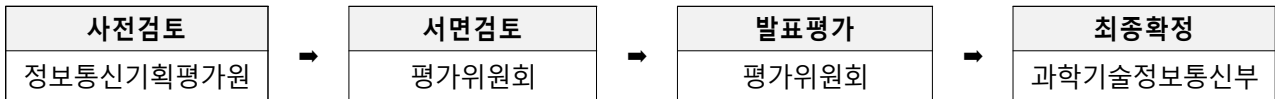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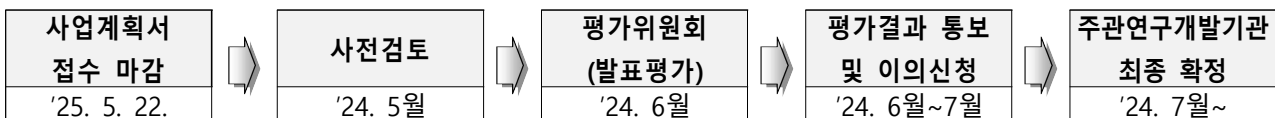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 ○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등

□ 평가절차

- 전문기관에서 참여조건 등을 사전검토하고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확정



□ 평가일정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 평가방법 >

구분	평가방법	주요내용
1차	사전검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서류검토를 통해 신청자격(신청 제외기준) 및 의무사항 반영 등 과제신청 적합 여부를 확인
2차	서면검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검토
	발표평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평가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
3차	최종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우선 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미응모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 응모 과제일 경우는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로 추진하며, 미응모과제의 경우는 재기획 후 공고 추진

< 평가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수행 능력 (45%)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10
	○ 국내 수행기관의 전문성 및 역량 - 국내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및 역량 등) - 사업 추진체계(행정전담교육생 지정 등) 및 해외 협력 기관과의 소통 능력 등	10
	○ 해외 협력 대학 적합성 및 협력 방안 구체성 - 해외 협력 대학의 적합성(교수진, 인프라, 한국과의 협력, 글로벌 순위, 산학연 연계 등) - 협력 방안의 구체성(협력 계획(방향), 커리큘럼, LOI, 운영 의지 등)	25
인력 양성 계획 (45%)	○ 과제 추진 방향의 부합성 및 글로벌 교육 필요성·우수성	10
	○ 파견 교육생 선발계획의 체계성 및 공정성 -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 우수 파견 교육생 선발계획, 공정성 확보 등	10
	○ 파견 교육생 수행 관리 방안의 우수성 - 현지 적응을 위한 출국 준비 및 파견 교육생 모니터링, 교육 지도, 환경 조성 지원 등 교육 현장 상황 관리 * 온·오프라인(전화, 이메일, 필요시 현장방문 등) 수단을 활용한 파견 교육생 상시 모니터링(출결, 건강상태 등) 등	10
	○ 성과 및 사후 관리 방안 구체성 - 파견 교육생의 성과 창출 지원 방안 및 향후 진로 조사, 관리 계획 등 사후관리·홍보	10
	○ 예산 활용의 적정성	5
기대효과 (10%)	○ 인력 양성 기대효과 - AI반도체 인력 양성을 통한 관련 산업계 배출 파급효과	5
	○ 후속 연계 사업 등 성과 및 파급효과 - 결과 보고서 등 성과 관리 및 활용 방안	5

□ 평가 시 우대(가점)에 관한 사항

- (가점사항) 최대 1점 (* 전산 접수 시 관련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
 - 최근 3년(접수마감일 기준)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90점 이상)" 판정을 받은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평가 시 감점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1점)

7

과제신청시 유의사항

연구개발과제 공통사항

- 연구개발계획서가 공고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사업 공고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안과제 분류) 본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으로 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사항을 선정된 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함
- 신청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함

□ 사전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회수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제재정보 확인 : <https://www.ntis.go.kr/rndgate/eg/si/sa/view.do>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동 사업은 교육생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해당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①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받지 않음 (동법 시행령 제64조②항 제4호)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인재양성,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성과활용

- 제3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종료 후 5년 동안 성과활용보고서 제출(후속 연계 과제 발굴, 성과 관리 등 사후 관리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전문기관의 요청 시 해당 내역에 대한 자료 제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8

신청안내

□ 공고 및 전산 등록(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 서류)

공고기간	전산(iris.go.kr) 등록기간
2025.4.10.(목)~5.21(수) 오후3시 까지	2025.5.12.(수)~2025.5.21.(수) 오후3시까지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오후3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마감 당일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 불안정 할 수 있으므로, 마감 하루전 제출 완료를 권장함 ○ 마감시간(오후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제출 서류

번호	서류명	제출형식	제출처
1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IRIS)
2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전자파일 (PDF)	
3	(필수)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4	(필수)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선택) 해외 협력 대학 참여의향서(LOI), 커리큘럼 등		
7	(선택) 연구개발 사용 신청서		
8	(선택)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9	(선택) 해외 협력 대학 참여 의사 확인 자료(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등))		
○ 1, 2, 3, 4, 7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신청 및 접수 방법

- 접 수 처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AI반도체글로벌역량강화 신규과제 선정 공고' 검색 후 구비서류 등록
-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 신청서류 양식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공지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AI반도체글로벌역량강화 신규과제 선정 공고'
- ☞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접수불가시 기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을 활용하여 접수 예정(필요시 추후 별도 공지)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 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IRIS 사용 매뉴얼)

신청 시 주의사항

-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 사항'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과제 접수 전 조치 필요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
- 신청기관 실수로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9

사업설명회

- 일시/장소 : 2025.4.22. 14:00~15:00 / 대한상공회의소* 12층 IITP 대회의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10

문의사항

반드시 공고문/사업안내서를 확인 후 문의 요망

- 전산등록 관련 문의 : IRIS 콜센터(1877-2041)
- 사업 관련 문의 : 042-612-8485(IITP 글로벌·핵심인재팀)
- 이진석 수석 intlmgt@iitp.kr